

의안번호	3090
의결 연월일	2022. 4. 25. (제75회)

제7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 의 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제의연월일	2022. 4 22

제7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안 번호	3090
----------	------

제의연월일 : 2022. 4. 22.

제 의 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회의장

1. 제의이유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제7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회 기 : 2022. 4. 25.(월) <1일간>
- 주요안건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사일정(안) : 붙임

제7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022. 4. 25.(월) / 1일간>

일시	구분	처리안건	비고
4.25월) 09:30	의회운영 (제1차)	1. 제7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25.(월) 10:00	본회의 (제1차)	○ 개회식 1. 제7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75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회 속개 (11:00)
4. 25.(월) 10:30	행정복지 (제1차)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56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14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70일 이내로 한다.

②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회기마다 본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15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